고용노동부 **보도참고자료** 안전망강화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2021. 7. 9.(금) 배포 즉시 / 총 5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	과 장 엄대섭 서기관 박은정 사무관 오수학	044-202-7347 044-202-7352 044-202-7373
	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	과 장 서명석 사무관 임경희	044-202-7368 044-202-7374
	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	과 장 홍경의 서기관 이지은	044-202-7918 044-202-7909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

– 하반기, 「고용보험법」 및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개정(안) 국회 제출 추진 –

□ **고용노동부**(장관 안경덕)는 **7월 9일 고용보험위원회**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**'고용보험 제도개선(안)'을 의결**했다고 밝혔다. 이번 제도개선(안)은 지난 4월부터 **노사 및 전문가**가 참여한 **「고용보험 제도개선TF」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**됐다.

○ 의결된 제도개선(안)은 ▲**구직급여 반복수급** 및 **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**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,

- ▲예술인·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, ▲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, ▲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**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**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.

□ 고용노동부는 이번 **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**으로 「고용보험법」 및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개정(안)을 마련하고, **7월 중 입법예고**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.

< 고용보험 제도개선(안) 주요내용 >

1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

○ 현재 **「고용보험법」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**으로 규정되어 있는 '**소정근로시간**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**미만인 사람**(초단시간 근로자)'의 경우

- **초단시간 근로자**로 종사하고 있는 **해당 사업에 한정**하여 **「고용보험법」을 제외**하도록 명확히 규정(예술인·노무제공자 등 병행시 예술인·노무제공자로는 고용보험 적용)

* 초단시간 근로자와 함께 법 적용제외자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, 사학연금 적용자 등은 입법 취지상 현행과 같이 예술인·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법 전체를 미적용

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

○ 모든 국민의 **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**을 규정하고 있는 **「헌법」의 원리, 일정 나이 미만**인 사람(예: 영유아 모델)은 **보험료 납부**에도 불구하고 **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** 등을 고려하여,

- **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**을 '**15세**'로 설정하되, 원하는 경우 **임의가입**을 허용

※ 근로자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에 최저연령(원칙적으로 15세 이상)이 규정되어 있음

3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

○ 「출입국관리법」 상 [1]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등 **적법성**과 [2]체류기간 등 **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** 등을 고려하여,

- **고용보험을 적용**받는 **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**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(구체적인 체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)

※ 외국인인 근로자의 경우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의2에 적용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

4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

○ 구직급여를 **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**한 사람의 경우 **세 번째 수급**부터는 **수급 횟수**에 따라 **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**하고, **대기기간을 연장***

* (예) ▲(구직급여일액) 5년간 3회 10%, 4회 25%, 5회 40%, 6회 이상 50% 감액
▲(대기기간) 5년간 3회 2주, 5년간 4회 이상 4주

○ 다만, 1)**적극적 재취업 노력**이 있는 경우*, 2)**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****, 3)입·이직이 빈번한 **일용근로자**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**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**

* (예)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/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
** (예)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(8시간) 80% 미만

○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**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**

5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

○ 사업장별로 1)**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**(상용직에 한함) 중에서 **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**(예: 90% 이상)이 높고,

- 2)**3년간 부과된 보험료**(노·사 부담분) **대비**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**수급액이 높은 사업장**(예: 5배 이상)을 대상으로 **사업주 보험료 부담분 외에 추가 부담분** 부과(예: 사업주 부담분 0.8% → 1.0%)

○ 다만, 1)**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**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**구직급여를 수급**한 사람은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산정 시 제외하고, 2)**직접일자리 등 예산 제도**상 1년 미만 일자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도 수치 산정시 제외

○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등은 **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**('25년 최초 적용)

6 유형이 다른 복수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자격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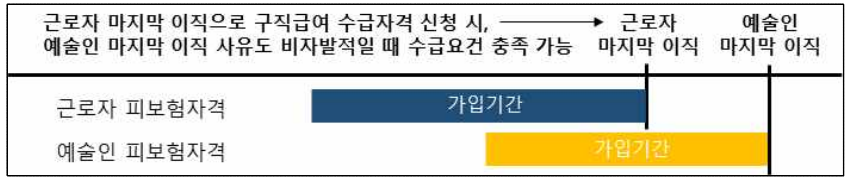
○ **유형**(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 등)**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**을 가진 **복수 피보험자격자**가 **구직급여 수급시 불이익***이 **발생하지 않도록,**

* (예) 근로자(월 500만원)로 10년간 근무하다 해고된 이후 예술인(월 50만원)으로 2개월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→ 예술인로서의 수급자격만 인정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(예술인으로서 3개월) 미충족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나, 근로자로서 수급자격도 인정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가능

-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**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**할 수 있도록 함

○ 다만, **비자발적 이직을 요건**으로 하는 **현행 구직급여 제도와의 정합성**을 고려하여,

- 구직급여 신청을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**시간상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**이 있는 경우에는 **그 이직 사유**도 **비자발적**일 때만 구직급여 **수급자격을 인정**



7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개편

○ **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**을 사업주가 「**소득세법**」에 따라 **매월 신고**하는 **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판단**할 수 있도록,

- ▲**판단기준 기간**(신청일 이전 1개월 →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근무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)과 ▲**근로일수 요건**(10일 미만 → 총 일수의 1/3 미만)을 개편*

*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명세서는 월 근로일수는 '월력상 1개월 단위'로 신고

8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

○ **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**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**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** 후 **비자발적으로 이직***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**대기기간을 4주**(현재 7일)**로 연장**

*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

9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

○ 현재 **구직급여를 지급** 받으려는 사람은 **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**하여 **수급자격 인정 신청**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,

-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**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**에는 출석하지 않고 **정보통신망**(고용보험 시스템)**을 활용하여 실업을 신고**할 수 있도록 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박은정 서기관(☎044-202-7352),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사무관(☎044-202-7374),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이지은 서기관(☎044-202-7909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